

『구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 및 정책을 수립·시행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성별영향평가 대상, 시기, 반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9조)
- 특정성별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성별영향평가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, 정책 수립·시행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안으로,
-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,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성별영향평가는 법령,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2002년부터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제도임.
- 우리시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바,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규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전국 221개 지자체, 경상북도를 포함한 도내 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,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됨.

- 양성평등이 아닌 다양한 성을 인정하게 되어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여성만을 위한 정책 양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, 상위 법령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정책의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으로 정책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